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688호 2022. 8. 10.(수)

차 례

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8호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입안 공고·열람 \_\_\_\_\_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448호

#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8. 1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I.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###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	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시 서구 원창동,석남동 일원	2,093,078.8	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-237호 (2006.12.18)	

### 2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2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(변경)

가) 공업용지 (변경없음)

나) 상업용지 (변경없음)

다) 자연녹지용지 (변경없음)

라) 기반시설용지 (변경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	
V	V-2, 3, 5 (주차장)	지정 용도 변경	기정	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주차장(단, 주차전용건축물 제외)	
			V-2, 5	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주차장(단, 주차전용건축물 제외)	
			V-3	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주차장 ○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20%이내 [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: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(종교집회장 제외), 판매시설(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), 운동시설(운동장, 골프연습장 제외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]	
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	
		건폐율	○ 70% 이하		
		용적률	○ 400% 이하		
		형 태	○ 담장은 1.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 설치를 권장	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V	V-2, 3, 5	V-3 건축용도 변경	○ 북항배후부지 상업지역 내 이면도로를 이용한 노상 불법 주차차 및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토록 하고, ○ 입지한 업체와 연계하여 잠재적 수요자를 고려하고, 도입가능 및 시설에 적합한 규모로 변경하여 상업지역 내 지원기능 수행을 통한 북항 일원의 지속적 활성화 도모

마) 지원시설용지 (변경없음)

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1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2. 의견제출: 도시관리계획(안)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III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개발과, 032-560-6873, 서구 서곶로 307)

IV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